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47
----------	-----

2021. 3. 23.(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3월 12일

-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 (안 제4조)
  - (前)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後) 적극행정위원회
  -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한 면책 건의
-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성 확대 (안 제5조)
  - (前) 9명 이상 15명 이하 → (後) 9명 이상 45명 이하
- 회의 운영 사항 개정 (안 제6조)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가능
-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2조)
  -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등 선발

##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함.
- 안 제4조에서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대 반영함.

- 특히 안 제4조제5호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6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행정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8. 25.]

####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 안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이상 45명 이하로 확대 변경하고, 안건의 내용을 고려해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민간위원 1/2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의 개정으로 적극행정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서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 8명 이상 (민간위원 1/2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 를 도입한 것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 안 제12조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등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는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적극 행정의 주체는 공무원이며,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를 신설해 적극행정 추진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변경과 위원수를 기존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 변경한 것으로, 이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또한 포상 지급 근거 신설도 적극행정 추진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바 본 조례안은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

<참고자료> 2020년 충청북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현황

□ 2020년 개최현황 (총 4회 개최)

- (1회) 2. 12.(수)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9명(가점7,휴가2)
  
- (2회) 4.14~4.17 /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적극행정 실행계획  
\* 22개 실행과제 및 5개 주민체감형 중점과제 발굴·관리, 지방공기업  
협업 추진체계 구축 등
  
- (3회) 5.20~5.21 / ‘Post-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 신속추진방안’ 의견제시  
\* 사업의 발굴·조례 등 규정 적극해석 및 사업 심사기준 탄력적 적용,  
신속추진을 위한 예산 및 계약제도 적극 활용 등
  
- (4회) 9.17.(목)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14명(가점11,휴가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7
----------	-----

제출연월일 : 2021년 3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 (안 제4조)
  - (前)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後) 적극행정위원회
  -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한 면책 건의
-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성 확대 (안 제5조)
  - (前) 9명 이상 15명 이하 → (後) 9명 이상 45명 이하
- 회의 운영 사항 개정 (안 제6조)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가능
-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2조)
  -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등 선발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적극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지원위원회 구성)”을“(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15명”을 “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본문 및 단서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적극행정 포상) 도지사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등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적극행정 <u>지원위원회</u>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u>지원위원회</u>(이하 “<u>지원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공무원이 <u>지원위원회</u>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li> <li>3. <u>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u></li> <li>4. (생략)</li> <li>5.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u>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u></li> </ol> <p>&lt;<u>신설</u>&gt;</p> <p>제5조(<u>지원위원회</u> 구성) ① <u>지원위원회</u>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u>15명</u>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p>	<p>제4조(적극행정<u>위원회</u> 설치 및 기능)----- ----- ----- 적극행정<u>위원회</u>(이하“<u>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위원회</u>----- -----</li> <li>3. 영 제13조에 따른 <u>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u></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u>면책건의에 관한 사항</u></li> <li>6. <u>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li> </ol> <p>제5조(<u>위원회</u> 구성) ① <u>위원회</u>는 ----- -----<u>45명</u>----- ----- -----</p>

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 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북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지원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

② 위원회의

③ 위원회의

④ 위원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회의

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 4. (생략)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회를-----  
위원회의-----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  
위원회의-----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  
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생략)

제11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  
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는 그렇지 않다.

<신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에-----

----- 위원회는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등)위원회에-----

위원회에-----

제12조(적극행정 포상) 도지사는 적  
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  
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등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  
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위원회-----

----- 위원회-----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제목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0. 8. 25.>

####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근거 마련

### 2. 비용 발생 요인

-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금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제12조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적극행정 유공자 12명, 최우수 700천원, 우수 500천원, 장려 100천원

나. 추계 결과 : 연 4,000천원

-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금

- (최우수 2명 × 700천원) + (우수 4명 × 500천원) + (장려 6명 × 100천원) = 4,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출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유공자 포상금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재원 조달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자체 수입	지방세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